

# 서울특별시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 장 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현재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칙(학교규정)을 살펴 보면 학생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속옷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 까지 규제하여,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장의 학칙 제·개정 법적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면 학칙 제·개정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학칙 제·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2항의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